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목적)

-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② 시설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0조 (이용계약)

- ①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③ 계약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포함한다.
 - 1. 계약당사자
 - 2. 계약기간
 -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5. 그 외 기타사항 등
- ④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

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1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이 이용자(또는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이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계약해지)

-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 납부를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5.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6.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정될 경우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인에게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판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종료 등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정산 및 전액 납부를 해야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 ② 이용자의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 급여수가는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의 고시 수가를 따르며, 고시가 변경될 경우 자동으로 기관도 이에 따른다.
- ③ 재가급여 비용(비급여 포함)은 이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④ 본인부담금 총합계는 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용의 일부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③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관한 알 권리

제1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②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⑥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 ⑦ 이용자가 사망 시에 이용자를 대신하여 이용료 전액을 납부할 의무

제16조 (신원인수의 방법)

- ① 이용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신원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는 등에 임한다.